

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67	21	1979.9.6	중재 신 병 권

의안 "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"

원부개정

의결사항 "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" 을
별안과 같이 원부개정한다.

제외관계
법규조항

한국은행법 제 59 조

제외되지

금융기관저축성예금종목의 등폐함에 따라
본선 권기와 같이 의결할것을 제의함

참고사항

1. 제외관계 법규조항

한국은행법 제 59 조

~ / ~

2024

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 57 조 제 58 조
의 범의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
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.

1.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
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중
류별 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
예금지급준비율의 결정
2.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의 100분의 25
까지 한국은행권으로 보유하는 것의 허
용

한국은행법 제 57 조

-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
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 준비금의

최저료를 정하며 확보하다고 인정할

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

(이 하 정 략)

2026

"금융기관예금지급준비에 관한규정" 일부개정(안)

현행	개정(안)
<p>제1조 ~ 제2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>제3조 (예금의 종류) ① 제2조에 의한 저축성 예금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예금은 요구불예금으로 분류한다</p> <p>정기예금, 정기적금, 통지예금, 특별정기가계예금, 자유원리예금, 저축예금</p> <p>②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예금은 저축성예금으로 분류한다.</p> <p>제4조 ~ 제6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이하 생략)</p>	<p>제1조 ~ 제2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 (예금의 종류) ① 제2조에 의한 저축성 예금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예금은 요구불예금으로 분류한다.</p> <p>정기예금, 정기적금, 통지예금, 특별정기가계예금, 저축예금</p> <p>②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예금은 저축성예금으로 분류한다.</p> <p>제4조 ~ 제6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

권	경 (㉔)
<p>(신) _____ (권)</p> <p>2028</p>	<p>부 _____ 처</p> <p>1 이 가정은 1919 2. 2 부머 시행한다</p> <p>2 이 가정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자유취업여금은 등 인출 시까지 종전가정을 계속 적용한다.</p>